

소비조합운영위원회규정

2009.07.01. 제정 2011.04.18. 일부개정 2012.08.01. 일부개정 2013.09.16. 일부개정
2014.03.01. 일부개정 2020.05.01. 일부개정 2023.09.01. 일부개정

<학생·장학봉사팀>

제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동명대학교 소비조합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 산하 학생 및 교직원이 이용하는 소비조합 복지시설(식당, 매점, 이·미용실, 복사점, 사진관, 안경점, 문구점 등)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도모하고,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 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대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조합 복지시설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(개정 2020.5.1.)
② 소비조합 복지시설은 동명대학교 교수·직원과 학생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한다.(신설 2020.5.1.)

제4조(사업의 종류)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.

- 1. 교직원 및 학생의 복지후생 사업
- 2. 기타 목적을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구성) 삭제 <2020.5.1.>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3.9.16., 2014.3.28., 2020.5.1.)
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, 학생·장학봉사팀장, 시설안전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(신설 2020.5.1., 개정 2023.9.1.)
③ 임명직 위원으로 노동조합 추천 1인, 「학칙」 제66조의2에 의한 교수협의회 추천 1인, 학생대표 4인(총학생회장, 총학생회부회장, 학생복지위원장, 여성국장)을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(신설 2020.5.1.)
④ 위원장이 궐위될 경우에는 학생·장학봉사팀장이 위원장이 된다.(신설 2020.5.1., 개정 2023.9.1.)
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(신설 2020.5.1.)

제7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 위원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당연직 위원은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2.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13.9.16.)

제8조(회의소집) 위원장의 소집 요청 및 학생대표 4인이 소집을 요청할 때 협의를 하여 소집을 한다.(개정 2013.9.16.)

제9조(회의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소비조합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
3. 복지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
4. 기타 중요 사항

제11조(세부사항) 본 규정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